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서예진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4522호

시행일자 2021. 02. 24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**

1. 관련근거 :
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55호(2021.02.24.)
 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453 (2021.02.24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개정내용
 - 누도내시경 검사 등 19항목 평가주기 설정

나. 시행 예정일 : 2021.03.01.부터

붙임 : 고시 개정안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